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행정구역이 개편되었거나 그 명칭이 변경되는 등 실제 해외제조업소의 시설은 이전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외제조업소”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외제조업소가”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해외제조업소”를 각각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한다.

라.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품명, 원료명 및 제조·가공의 방법

제11조제1항제1호 중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축산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외작업장의 소재지(행정구역이 개편되었거나 그 명칭이 변경되는 등 실제 해외작업장의 시설은 이전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해외제조업소”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위반사항란 제3호 중 “해외제조업소”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

외작업장”으로 한다.

별표 13 I 제9호라목 중 “수입식품등 이력추적관리”를 “해당 수입식품등 유통이력추적관리”로 하고, 같은 표 II 제3호나목1) 위반사항란 1) 중 “유해 화학물질”을 “유해물질”로 한다.

별표 15 제4호나목5) 중 “수입식품등”을 “수입식품등(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해외제조업소”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해외제조업소”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식품명”을 “제품명”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해외제조업소”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해외제조업소의”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한다. 같은 서식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25호서식 4쪽 중 1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부터 시행한다.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업소명		영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신청내역	식품유형			
	제 품 명 (신청제품이 많을 경우 별지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	제조국가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
의
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입식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 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제품명, 원료명 및 제조·가공의 방법 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재질·용도·바탕색 등에 관한 사항 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명칭, 제조·가공의 방법, 원료명 및 그 배합비율 <u>라. 축산물의 경우: 제품명, 원료명 및 제조·가공의 방법</u>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u>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u>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결과보고서 3. <u>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u>이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28,000원
-------------	--	------------------------

유의사항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등록된 수입식품등의 제품명, 원료(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그 배합비율을 포함합니다) 또는 제조·가공 공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변경신청서에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실사 → 등록여부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신고시기	A: 본신고 [] B: 사전신고 []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신고제품구분	1: 농·임산물 [] 2: 수산물 [] 3: 축산물 [] 4: 가공식품 [] 5: 식품첨가물 [] 6: 기구 또는 용기·포장 [] 7: 건강기능식품 []	처리기간	식품등·건강기능식품: 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10일 (진균수시험대상 10일, 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대상 15일) 축산물: 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정밀검사 18일(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대상 15일, 다이옥신 시험검사 15일)																

수입신고인 (수입화주)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업종	허가(등록·신고)번호
	주소	
제조 가공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업종	허가(등록·신고)번호
	주소	
수입신고 대행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등록번호
	주소	

제품명	한글명	유형 또는 품목
총수량 (단위:)	순중량 kg	과세가격 (단위: US\$)
총항수 항번	화물관리번호	선하증권(B/L) 번호
세번번호 (HSK 번호)	용도	성분·재질 및 제조공정: 제2쪽에 기재

소비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축산물: 해외작업장 (포장처리·가공장)]	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도축장 [축산물만 해당]	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수출업소				회사명		
	주소					
포장장소	등록번호			주소		
선적일	년	월	일	선적항		
입항일	년	월	일	선명(기명)		국내도착항
검사(반입)장소	보관업 등록번호			상호	(☎ - -)	
				성명		
				주소		
반입일	년	월	일			
검사기관						

이력번호(수입최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만 해당함)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여부	표시함[], 표시하지 않음[], 해당 없음[]
유기식품등 여부	예[], 아니오[]
영유아용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예의 해당 여부	예[], 아니오[]
식품조사처리 여부	완제품 조사[], 원료조사[], 해당 없음[]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식품 여부	예[], 아니오[]
고열량·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고령친화식품 여부	영양성분 조절 식품[] 경도조절제품[] 점도조절 제품[] 해당없음[]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여부	예[], 아니오[]
어린이 섭취용으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여부	예[], 아니오[]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생략 대상 여부	예[], 아니오[]
우수수입업소 등록번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u>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u>)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변경등록신청서를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 ⑦ (생략)	제2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행정구역이 개편되었거나 그 명칭이 변경되는 등 실제 해외제조업소의 시설은 이전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u> ----- ----- -----.
제4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식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 가. ~ 다. (생략) <u><신설></u>	제4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① ----- ----- ----- ----- ----- ----- ----- -----.
	1.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u>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품명, 원료명 및 제조·가공의 방법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u>해외제조업소</u>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 결과보고서	2. ----- ----- <u>해외제조업소</u> <u>또는 해외작업장</u>----- -----
3. <u>해외제조업소가</u>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u>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해당 <u>해외제조업소의</u> 명칭 및 소재지	3. --- <u>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u>-----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7조제6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 ----- ----- ----- ----- ----- --.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1. -----

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2. 3. (생략)

⑦·⑧ (생략)

제11조(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국제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출국 정부가 해당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최초로 수입허용 요청을 하는 경우

2. 3. (생략)

②·③ (생략)

제13조(해외작업장의 변경등록) ①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

2. 3. (현행과 같음)

⑦·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

-----.

1. ----- 축산물-----

2.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해외작업장의 변경등록) ① -----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 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외작 업장 변경등록신청서를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u>해외작업장의 소재지(행정구 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u> 4. (생략) ② (생략) 제33조(검사결과 등의 공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제품명, 제품 유형, 수입업소, <u>해외제 조업소</u>, 제조국 및 등록일 2. 3. (생략)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해외작업장의 소재지(행정구 역이 개편되었거나 그 명칭이 변경되는 등 실제 해외작업장 의 시설은 이전되지 않은 경 우를 말한다)</u>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검사결과 등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u>해외제 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u>----- ----- 2. 3.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수입식품정책과	
연 락 처	043-719-2162